

우치근린공원 민간 투자공모 열기 후끈

〈패밀리랜드〉

투자설명회 10곳 참가…광주시 “명품공원 조성 청신호”

광주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우치근린 공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치근린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광주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우치공원관리사무실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투자자 공모 현장설명회에 모두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광주 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한 서울지역 업체 등 유력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투자제 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종 제안서를 접수할 업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 지역 방송사와 서울 S사 등은 광주시에 우치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업체들이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백지위임과 다름없는 투자조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투자 대상지역은 우치공원 내 유희시설지구 14만1536㎡로, 참가 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이며 총사업비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제안자가 제시토록 했다.

시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2월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16일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시 평가위원회

를 열어 최종 제안서를 선정,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우치공원 유희시설은 ㈜금호리조트가 1991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장해 20년간 운영해 오다 2011년 6월 운영권이 만료되면서 2010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최종 제안서를 공모했다.

㈜금호리조트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유희시설은 공모를 통해 광주패밀리랜드㈜가 관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가 민간투자 공모에 나선 패밀리랜드 전경.

문화전당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추진

전시·교육·부대행사·홍보 등 협업 구체화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비엔날레(9월2일~11월6일)기간 동안 문화전당에서 특별전을 여는 것을 비롯한 광주를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최근 문화전당에서 이뤄진 공식 만남에서 전시, 교육, 부대행사, 홍보 등 양 기관의 업무 전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비엔날레 개막 효과를 높이고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가칭 통합티켓을 발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비엔날레

입장권이나 문화전당 관람권을 구입하면 비엔날레 전시와 문화전당 전시·공연을 모두 볼 수 있는 관람권이다.

두 기관은 협력사업 범위와 내용을 정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문화전당 기획운영과로 협력채널을 운영기로 했다. 비엔날레 특별전을 문화전당에서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엔날레는 오는 2월 중 문화전당에서 열린 특별전의 방식, 공간사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전당에 제시한다.

문화전당측은 “특별전을 여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문화전당, 중외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나서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의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 등이 망라된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발족, 문화전당 주변 공연·전시를 묶어 가칭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프리퍼페스티벌’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무 중 부상 직업군인

민간 진료비 전액 지원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으로,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향뉴스

‘현대판 음서제’ 없앤다

전남도, 전국 첫 무기계약직 공표제 시행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광주일보 2015년 6월 2일~8월 18일 보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의 무기계약직 운영 인원을 공개해 단제장 선거 이후 급증하는 등 불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7일 “오는 2월 1일부터 약근로자 4742명으로, 이 가운데 전남도가 200명, 시·군이 4542명이다. 올해 증원 수요 예측인원은 도 34명, 시·군은 208명으로 집계됐다. 채용 인원 공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내년부터는 매년 1월 연간 인원을 확정해 공개

한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그 폐단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군이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 없이 무기계약직 등을 선발했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억제해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부작용도 염려됐었다.

윤승중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그 동안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오해와 비판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공표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도와 시·군이 자정노력을 보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표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운영계획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d@

내달 2일 광주서 ASEM 문화장관회의 준비회의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문화장관 회의를 앞두고 내달 관련국가 관리들이 모여 준비 회의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국장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6월 ASEM 문화장관회의의 안건과 일정, 분과별 회의를 주

재할 의장국 선출, 제8차 ASEM 문화장관회의의 개최국 선정 등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 등 광주 일대도 둘러볼 예정이다.

ASEM은 1996년 창설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국가 간 협의체로,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 등 총 51개 회원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으로 이뤄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달 12일부터 난폭운전맨 징역·벌금형

다음 달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 일정이나 속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

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연향뉴스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1. 공매대상 물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동 715 첨단창우빌딩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층별 일괄매각

※ 단,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진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차별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2. 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

차수	공매일시	차수	공매일시	차수	공매일시
1	2016.02.03 11:00	4	2016.02.03 14:00	7	2016.02.16 13:00
2	2016.02.03 11:30	5	2016.02.16 10:00	8	2016.02.16 14:00
3	2016.02.03 13:00	6	2016.02.16 11:00		

※ 유찰될 경우 차차회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5% 차감됩니다.

※ 공매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가격의 약6.8981%인 부가가치세를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별도)

차 수	3층(302호, 303호)	4층(401호, 402호, 403호)	5층(501호, 502호, 503호)
1	567,000,000	961,000,000	967,000,000
2	538,650,000	912,950,000	918,650,000
3	511,718,000	867,303,000	872,718,000
4	486,132,000	823,938,000	829,082,000
5	461,825,000	782,741,000	787,628,000
6	438,734,000	743,604,000	748,247,000
7	416,797,000	706,424,000	710,835,000
8	395,957,000	671,103,000	675,293,000

3. 공매장소: 광주은행 본점 18층 여신관라부 사무실 (광주시 동구 계봉로 225)

4.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도 유효)

- 공매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공매대상물건에 대하여 총별로 일괄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자를 대상으로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며, 총별 응찰 최고가격이 동일할 경우 다른총과 일괄 응찰하는 자를 낙찰자로 지정합니다
- 공매 유찰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시간 20분 전까지 당사 소정양식인 수익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제출 및 납부(또는 납부영수증)한 자에 한하여 직전 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익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위 수익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수익계약신청서 및 계약금(계약금액의 10%)수납 접수 선착순으로 합니다.
- 상기 공고된 공매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수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응찰자의 공매 참가는 공매시작 10분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금액의 10%이상 금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명의변경이나 계약인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 교환결제가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추심료가 소요되는 자기앞수표는 추심료를 납부하여야 함).

6. 입찰신청서류

-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인가증명서(법인 :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대리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각 1부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자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입찰보증금 대체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잔금 9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세액,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 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유예결정(위크아웃제시)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저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매매완결에 장애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금(이자금을 제외한다)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정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9. 유의사항

-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목적 하자
 - 법률상 원인으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
 - 행정상완치,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관리제한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금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위 공매대상 부동산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모두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공매기일에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규칙”의 내용을 승인 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공고(열람서류 포함)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매물건의 원원래주 명제로 인하여 공매 당일 취소 될 수 있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TEL.) (02)3430-2062 / FAX) (02)557-6631 / 개발신탁본부 신탁사업1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KOREA trust 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